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56
----------	------

2023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1. 제안이유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9조)

다.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5조)

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18조)

III.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56호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 선정 및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동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 제54조에 따라 위임된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제298회 정례회(2020.12.22.)를 통해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는 행정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선정 및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지침」(이하 ‘교육청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 운영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선정과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과 시민의 직접적 통제기능을 배제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지침으로 관리 운영되었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선정과 관리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과제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직접적 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취지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개정조례안은 총 18개의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서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과 운영, 그리고 평가 및 공개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구성체계는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에 맞춘 절차와 조항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관련 지침¹⁾ 등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9조)

○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위원의 해촉,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회피,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운영, 안 제9조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규정은 ‘행정업무규정’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과 교육청 지침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동 개정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위원회 구성 비교

구분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교육청 지침	개정 조례안
명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인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성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각 부서의 총괄과장	-	총괄부서의 장
임명·위촉직	- 각 실·국별 총괄과장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각 실·국별 부서장 4명 및 정책보좌관 1명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이 추천하는 자 4명	-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회의 시마다 재구성	위촉위원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1)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법제처, 2021.12

[표-2] 위원회 구성 외 규정 비교

구분	행정업무규정	교육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교육청 지침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한다) 3.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 나.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척·회피	제50조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조⑩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운영 ◦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운영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5조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제4조⑧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당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정책연구용역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8조)

○ 동 개정조례안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추진 절차([붙임] 참조)를 규정한 것으로, ① 행정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과(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②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기준 사항을 조례에 규정(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한 것, 그리고 ③ 현행 조례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안 제17조)한 것으로 대부분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업무편람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표-3] 참조).

- 이처럼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또는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조례안 관련 법령 근거 규정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규정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 심의 요청)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7조, 교육청 지침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8조, 교육청 지침
제12조(과제담당관의 지정)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제14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교육청 지침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1조, 교육청 지침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동 조례 제4조, 제5조, 교육청 지침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동 조례 제6조, 교육청 지침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관계 법령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한다)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부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 심의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기간과 수행방식
4. 기존 정책연구과제와의 유사·중복성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2조(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 ① 과제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과제 연구비의 증액
2. 정책연구과제 주요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3.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간 변경
2.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미비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 전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서울교육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